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2

창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51629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김해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변 론 종 결 2019. 7. 18.

판 결 선 고 2019. 10. 24.

주 문

1. 피고가 2017. 8. 2. 원고에게 한 취득세 956,715,200원, 교육세 82,004,130원, 농어촌특별세 157,700,27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2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피고는 2012. 8. 1. 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2015. 8. 11. 법률 제1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따라 김해시 B리, C리 일원 1,552,000㎡에 D를 조성하는 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하고,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redacted]시고시 E, 이하 '이 사건 사업').

나. [redacted], [redacted]남도, [redacted]시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구거, 도로, 제방 등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무상양도하기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피고는 최종 변경된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인 2017. 1. 26. 김해시고시 F로 원고에게 무상양도하는 국·공유지 및 이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을 아래와 같이 338필지 219,555㎡로 고시하였다.

구분	계		국유지						공유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경상남도		김해시	
	필지 수(개)	면적 (㎡)	필지 수(개)	면적 (㎡)	필지 수(개)	면적 (㎡)	필지 수(개)	면적 (㎡)	필지 수(개)	면적 (㎡)	필지 수(개)	면적 (㎡)
계	338	219,555	16	3,390	168	161,563	24	33,991	62	5,466	68	15,145
구거	105	126,837	-	-	102	100,776	3	26,061	-	-	-	-
도로	88	66,334	-	-	63	59,928	-	-	-	-	25	6,406
제방	3	40	-	-	-	-	3	40	-	-	-	-
답	140	26,325	16	3,390	3	859	17	7,871	62	5,466	43	8,739
공장	1	19	-	-	-	-	1	19	-	-	-	-

다. 피고는 2017. 4. 7. 준공일을 2017. 3. 31.로, 준공면적을 전체 사업시행지 면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2

1,643,802.1㎡[1] 중 1,519,186.1㎡로 하여 D 부분준공(1단계) 인가를 공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7. 4.경 피고에게, 나항과 같이 무상양도된 국·공유지 중 1단계 준공 부분 토지 319필지 204,682㎡(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기는 준공일인 2017. 3. 31., 과세표준은 이 사건 토지 면적에 피고가 산정한 토지 평균지가 406,130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83,127,500,660원, 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무상귀속에 대하여 적용되는 1천분의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1,327,587,749원, 지방교육세 113,793,236원, 농어촌특별세 218,833,145원 합계 1,660,214,130원(이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7. 7. 19. 피고에게 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인은 원시취득으로 취득세율 1천분의 28이 적용되어야 하고, ②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고시 및 무상귀속토지 사용허가를 받은 2012. 8. 1.이므로 과세표준은 2012. 8. 1.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야 하며, ③ 2012. 8. 당시 적용되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7. 8. 2. 원고에게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원처분'). 원고는 2017. 9. 18. 조세심판원에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사.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1단계 부분준공일인 2017. 3. 31.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직권으로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임의로 평가한 금액이 아닌 산업단지 준공인가일인 2017. 3. 31. 당시 시가표준액(2016년도 개별공시지가)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1) 이 사건 사업시행지 면적은 2015. 3. 5. 김해시고시 G로 1,641,467㎡로, 2016. 3. 17. 김해시고시 H로 1,644,111㎡로, 2017. 1. 26. 김해시고시 F로 1,643,802.1㎡로 각각 변경 고시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2

경정(무상으로 국가 등으로 다시 귀속되는 토지에 대한 세액은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018. 3. 15. '피고가 2017. 8. 2. 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김해시 I 외 318필지 토지 204,682㎡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취득당시 시가표준액(2016년도 개별공시지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

아. 피고는 2018. 3.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6. 10. 31. 결정고시한 2016.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전환된 가지번이 불명확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곤란하며, 이 사건 토지 204,682㎡를 포함하는 2016. 7. 1. 기준 이 사건 사업시행지 전체 면적 1,644,111㎡의 단위면적(㎡)당 평균 지가가 292,674.2531원[2]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59,905,151,468원[= 292,674.2531(원/㎡) × 204,682㎡]으로 산정하고, 원고가 납부할 세액을 취득세 956,715,200원, 교육세 82,004,130원, 농어촌특별세 157,700,27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원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하고 남은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7~12, 18, 19, 21, 22, 을 1~4(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26조 제5항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국가

2) 피고 주장에 따르면, ① 이 사건 사업시행지에 관하여 각 블록·롯트별로 결정·공시한 2016.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해당 블록·롯트의 면적을 곱하고, ② 그와 같이 계산한 각 블록·롯트의 개별공시지가를 합산하여 사업시행지 전체의 가액을 산정한 다음, ③ 그 합계액 481,188,958,900원을 2016. 7. 1. 당시의 사업시행지 면적 1,644,111㎡로 나눈 금액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2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이하 '무상양도 공공시설')에 대한 가액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를 기준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 역시 위 조항에 정한 '가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 고시한 2012. 8. 1.을 기준으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이다.

2)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적법하게 결정 ·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산정된 과세표준을 기초로 이루어진 처분도 아니어서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재결이 '피고에게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1,175,466,677원이며, 위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달리 과세표준을 59,905,151,468원으로 산정하여 이루어졌다.

나) 피고는 임의로 '이 사건 사업시행지 전체의 평균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나, 이는 지방세법 제10조, 제4조 제1항에 정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 즉 이 사건 토지 319필지를 구성하는 개별토지에 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볼 수 없다.

다) 피고가 작성한 2016.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공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상 개별토지 및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 또한 새로운 블록지번(BL)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소유자들은 블록지번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로 소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파악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2

수 없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2016.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위법하므로 이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라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업입지법 제26조 제5항에 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득 시기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본문은 '부동산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대금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4897 판결 등 참조).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입지법 제26조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2

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2항), 해당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하며(제4항), 제4항에 따른 귀속 또는 양도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가액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에 드는 예상 비용으로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대한 가액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항).

나) 지방세법에 따른 무상양도 공공시설에 대한 취득 시기

(1)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등 소유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66824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무상양도 공공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산업입지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시계획의 승인은 실시계획승인권자가 행정청의 지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하는 처분일 뿐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볼 수 없다. 사업시행자는 산업입지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 위 법률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에 관한 물권을 취득한다(민법 제187조). 따라서 실시계획의 승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규정한 무상승계취득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3)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산업입지법 제26조에 따라 무상양도 공공시설을 취득한 경우에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2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그런데 산업입지법 제26조는 무상양도 공공시설은 사업이 준공되어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제4항), 무상양도 공공시설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항). 이에 비추어, 산업입지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한 때에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행정재산의 용도폐지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무상양도 공공시설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데에 장애가 없도록 사용허가 및 용도폐지를 의제하는 규정일 뿐,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공공시설에 대한 사실상 소유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4) 달리 지방세법령에는 산업입지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무상양도 공공시설을 취득하는 시기는 산업입지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사업이 준공되어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로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

(1) 산업입지법 제26조 제5항에 정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대한 가액'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 제2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한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공공시설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조항일 뿐,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을 정하기 위한 규정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또한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받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2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당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은 앞서 본 무상양도 공공시설의 취득 시기와도 들어맞지 않는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등 소유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 승계취득에 해당한다. 사실상 취득가액이 없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여지는 없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240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19193 판결 참조).

(4) 그렇다면 무상양도 공공시설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 제10조, 제4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 즉 이 사건 사업의 부분준공일인 2017. 3. 31. 당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산업입지법 제26조 제5항 후문의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이 준용하는 국세기본법은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심사청구에 관한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80조 제1항, 제2항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2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토지의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가 11,175,466,677원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재결의 기속력이 미치는지

갑 2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 준공인가일인 2017. 3. 3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때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적용되어야 하나, 다만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피고가 임의로 평가한 금액이 아닌 이 사건 산업단지 준공인가일인 2017. 3. 31. 당시 시가표준액(2016년도 개별공시지가)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경정(무상으로 국가 등으로 다시 귀속되는 토지에 대한 세액은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경위 사항 기재와 같이 '피고가 2017. 8. 2. 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김해시 I 외 318필지 토지 204,682㎡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2016년도 개별공시지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고 결정한 사실, 이 사건 재결 이유에는 "청구법인(원고)이 제출한 이 건 산업단지 1차 준공일(2017. 3. 31.) 당시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2016년도 개별공시지가)은 11,175,466,677원인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그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인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2

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재결 이유 중 시가표준액의 액수 11,175,466,677원 부분은, 그 문언이나 이 사건 재결 이유의 체계 및 재결 이유 중 '무상으로 국가 등으로 다시 귀속되는 토지에 대한 세액은 비과세'라는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재결청이 원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그 경위사실로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토지의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액수를 밝힌 것일 뿐, 이를 재결청이 인정한 정당한 시가표준액이라거나 재결 주문의 전제가 된 요건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11,175,466,677원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이 사건 토지의 2016년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결정되었는지

(1) 피고 주장에 따르면, 피고는 ① 2016. 7.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시행지 1,644,111㎡의 공부상 지목을 답으로, 현황 지목을 잡종지로 보아 블록·롯트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고, ② 각 블록·롯트별로 위와 같이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해당 블록·롯트의 면적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다음, 이를 이 사건 사업시행지 면적 1,644,111㎡로 나누어 사업시행지 전체의 단위면적당 평균 지가를 292,674.2531원/㎡로 산정하였으며, ③ 위와 같이 산정한 단위면적당 평균 지가에 이 사건 토지 면적 204,682㎡를 곱한 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2) 부동산공시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란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그런데 위 (1)항 ②와 같이 산정한 금액은 피고가 임의로 산정한 이 사건 사업시행지 전체의 단위면적당 평균 지가일 뿐, 이 사건 토지 319필지를 구성하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2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사업시행지는 사업 시행 전에는 물론 그 시행 후에도 산업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 그 지목, 현황, 위치, 용도 등이 모두 다른 다양한 토지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다양한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를 피고가 임의로 정한 위 (1)항 ②와 같은 방식으로 합산·평균한 단위면적당 지가를 이 사건 토지 319필지를 구성하는 개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볼 수도 없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지방세법 제10조 및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2016년도 개별공시지가)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할 것을 명한 이 사건 재결의 기속력에도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있으므로, 그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서아람

판사 조현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2

판사 강희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2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2

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2

제96조(결정 등)

⑥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을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2015. 8. 11. 법률 제1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 그 결과를 관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2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고시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본다.
③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은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민간기업등의 요청에 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결정·인가·면허·협의·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2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1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②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귀속 또는 양도에 있어서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가액(價額)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에 드는 예상 비용으로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대한 가액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를 기준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귀속 또는 양도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2

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토지)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2.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등록이 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변경이 된 토지
4. 국유·공유에서 매각 등에 따라 사유(私有)로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②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그 해 7월 1일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다음 해 1월 1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2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地番)·지목(地目)·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21.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22.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24.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28.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29. "신규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1.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2.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79조(분할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0조(합병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합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목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2

가. 소유권 · 지상권 ·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나. 승역지(承役地)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다.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登記原因)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3.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6조(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 · 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① 지번(地番)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② 지번은 본번(本番)과 부번(副番)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 -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③ 법 제66조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것
2.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가.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나.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2

다.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3.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할 것. 이 경우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4.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할 것.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5.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할 것.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차례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가.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에는 그 지번
 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5호를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할 것
 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나.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다. 제72조제1항에 따라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④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①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②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도시개발사업 등 준공 전 지번부여)

지적소관청은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제95조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도에 따르되, 영 제56조제3항제5호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2

제95조(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① 법 제86조제1항 및 영 제83조제2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변경·완료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1. 사업인가서
2. 지번별 조서
3. 사업계획도

② 법 제86조제1항 및 영 제83조제2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측량검사를 의뢰하면서 미리 제출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 조서
2. 환지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고시된 환지계획서. 다만,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